

## 이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건축과

제정 2009· 7· 31 규칙 제399호  
일부개정 2014· 5· 13 규칙 제504호  
일부개정 2017· 3· 7 규칙 제59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이천시 건축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· 5· 13>

제2조(회의록의 작성) ① 이천시건축위원회 위원장은 「이천시 건축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· 5· 13>

② 이천시건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· 5· 13>

제3조(심의 서류) ① 「건축법」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「건축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(재심의) 신청서에 「건축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(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· 5· 13, 2017· 3· 7>

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(재심의) 신청서에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(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· 5· 13, 2017· 3· 7>

제4조(심의 기준)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· 5· 13, 2017· 3· 7>

1. 지역, 지구 및 주위 환경과의 조화
2. 교통처리 계획, 차량 동선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

- 3. 구조계획의 합리성
- 4. 재료, 공법 및 기술의 적정성
- 5. 각종 설비장식의 적정성
- 6. 에너지 절약 및 건축물 유지, 관리의 적정성
- 7.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정성
- 8. 그 밖에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 2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(이하 “업무대행자”라 한다)의 명부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·5·13>

② 시장은 대행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·비치된 명부 순서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이천시지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·3·7>

③ 업무대행자는 지정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(이하 “대행업무”라 한다)를 수행하여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(통보 당일 및 공휴일 미산입)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·5·13, 2017·3·7>

- 1. 연면적 1,000㎡미만 : 2일 이내
- 2. 연면적 1,000㎡~5,000㎡미만 : 4일 이내
- 3. 연면적 5,000㎡이상 : 7일 이내

④ 업무대행자가 사고,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담당자는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재추첨을 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4·5·13>

- 1. 건축사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람
- 2.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사람
- 3.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

4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

제6조(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 등)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4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에게 제2항의 산정방법에 의거 계산된 수수료를 조례 제21조제4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한정하여 매월 말일(또는 매주)에 건축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임시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이 중복될 경우 사용승인 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4·5·13>

② 제1항에 대한 수수료 산정방법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별표 2에서 정한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(1일 8시간)의 8분의 1 및 「건축사법」 제19조의3 규정을 토대로 작성된 해당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(백원 단위 이하 절사)으로 한다. <개정 2014·5·13>

부칙

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규칙의 폐지) 이천시 건축업무 대행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2014·5·13 규칙 제50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·3·7 규칙 제595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삭제 <2017·3·7>

[별표 2] <개정 2014·5·13>

##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업무 소요시간

(제6조제2항 관련)

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	검사대행 소요시간
660 제곱미터 미만	5시간
660 제곱미터 이상 ~ 1천 제곱미터 미만	6시간
1천 제곱미터 이상 ~ 2천 제곱미터 미만	8시간
2천 제곱미터 이상 ~ 5천 제곱미터 미만	9시간
5천 제곱미터 이상 ~ 1만 제곱미터 미만	11시간
1만 제곱미터 이상 ~ 3만 제곱미터 미만	15시간
3만 제곱미터 이상 ~ 5만 제곱미터 미만	19시간
5만 제곱미터 이상 ~ 10만 제곱미터 미만	25시간
10만 제곱미터 이상 ~ 30만 제곱미터 미만	32시간
30만 제곱미터 이상	37시간

※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 표에서 정한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(1일 8시간)의 8분의1 및 「건축사법」 제19조의3(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의 기준) 규정을 토대로 작성된 별표 6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(백원 단위 이하 절삭)으로 한다.

산정예시) 연면적이 1,500㎡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버섯재배사)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

- 건축물의 종별 종류 및 해당요율 : 1종(단순) 90%
- 현장조사·검사 소요시간 : 8시간
- 2007.01.01.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기술사 노임단가 : 263,837원

※ 산정식 = (해당연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/ 8) × 소요시간 × 용도별 요율  
 = (263,837원 / 8) × 8시간 × 90% = 230,000원

## 건축물의 종별 종류 및 요율

종 별	건축물의 종류	요율
1 종 (단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가설건축물, 창고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(정비공장,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가축용 창고, 관리사, 가축시장, 작물 재배사),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.(※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)</li> </ul>	90%
2 종 (보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(공항시설, 항만시설 제외), 장례식장, 교육연구시설(도서관 제외), 노유자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 제외), 위락시설, 공장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(정비공장,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가축용 창고, 관리사, 가축시장, 작물 재배사 제외)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묘지 관련 시설( 화장시설 제외), 관광 휴게시설(관망탑 제외),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.</li> <li>※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3종적용</li> </ul>	100%
3 종 (복잡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문화 및 집회시설, 운수시설(공항시설, 항만시설)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(도서관), 운동시설,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), 발전시설, 방송통신시설(촬영소), 묘지 관련 시설(화장시설), 관광 휴게시설(관망탑),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.</li> </ul>	110%

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4·5·13>

이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(제2조제1항 관련)

심의내용

1. 안 건 번 호 :

2. 제 목 :

3. 심의 요청자 :

심의결과 :

위원별 의견 :

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.

년 월 일

이천시 건축위원회 위원장

(인)

이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3호서식] 삭제 <2017·3·7>

[별지 제4호서식] 삭제 <2017·3·7>

[별지 제5호서식] 삭제 <2017·3·7>

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17.3.7>

###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요청서

건축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축 <input type="checkbox"/> 증축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축 <input type="checkbox"/> 재축 <input type="checkbox"/> 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수선 <input type="checkbox"/> 용도변경			
허가번호				
허가일자				
건축주				
설계자	사무소명			
	성명			
감리자	사무소명			
	성명			
건축물 현황	대지위치			
	용도			
	연면적			
	구조			

「건축법」 제27조 및 「이천시 건축 조례」 제21조, 제22조에 따라 상기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을 요청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  
 건축주 (인)

###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배정서

업무 대행자	사무소명	
	성명	
제출기한		

「건축법」 제27조 및 「이천시 건축 조례」 제21조, 제22조에 따라 귀하를 상기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  
 담당자 (인)